강 남 구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제목 지방세 환급금 반환결정 결의 및 통지

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다음과 같이 반환결의하고, 납세자에게 환급통지 하고자 합니다.

****
****
3. 결 의 일 : 2016. 5.17.
4. 통지방법 : 우편발송(환급액 30만원이상 등기/그외 일반우편)

붙임 1. 지방세환급금 반환결의서.
2. 환급반환결의내역서. 끝.

주무관 **정미진** 세무행정팀장 **추승열** 세무관리과장 **송필석** 기획경제국장 전결 05/17 **김용운**

협조자

시행 세무관리과-11818 ( ) 접수 ( )

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전화 02-3423-5604 /전송 02-3423-8865 / meijin@gangnam.go.kr / 부분공개